

-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예산군의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【붙임1】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2) 「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8조
- 3)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3조, 제4조, 제8조의2
- 4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조, 제4조, 제8조, 제9조, 제4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필요

다. 기 타

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 : 2024. 03. 05. ~ 2024. 03. 11.[7일간]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【붙임 2】

4) 성별영향평가 : 【붙임 3】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을 지원하여 농가의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(지원사업 등)은 해당 부서별 지원 사항에 대해 구분 명시하였고 안 제6조(재정지원)은 드론영농에 필요한 비용 및 경비 등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음.
- 드론 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기술 영농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함.